

(부연구단장 FAQ)

1. 자격, 선정 관련

1-1 지원에 나이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부연구단장은 10년 이상 장기간 왕성한 연구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1-2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후보자가 소속될 연구단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 수월성 또는 잠재력과 후보자의 연구계획 실행의 타당성입니다.

1-3 채용시기는 언제인가요?

부연구단장 채용은 연 3월과 9월에 진행됩니다. 연구단의 요청에 따라 IBS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국내외 주요 학회 및 저널을 통해 별도로 공개모집 절차가 안내됩니다.

1-4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연구단장의 선정절차는 연구단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진행되며, 서면평가-심층평가-종합평가의 순으로 평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 7개월 소요)

1-5 부연구단장의 정의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부연구단장은 연구잠재력이 큰 중견급 연구자로서, 연구단 내에서 연구단장과 협력하면서 자신의 연구그룹을 운영하게 됩니다.

2. 선정후 임용관련

2.1 선정후 어떻게 임용되나요?

연구단 종류	부연구단장 임용형태
본원연구단	IBS 수석연구위원(영년직)으로 임용
캠퍼스연구단, 외부연구단	유치기관의 소속을 유지하되 IBS와 별도 고용계약 체결(겸직)

2-2 부연구단장의 정년은 몇세인가요?

본원연구단의 경우 정년 65까지를 보장받습니다. 캠퍼스 연구단(KAIST, GIST,

DGIST, POSTECH, UNIST)과 외부연구단(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도 65세가 정년이나 특수한 상황(연구단 종료 혹은 유치기관의 신분종료 등) 발생시 예외가 적용됩니다.

2-3 근무장소는 어디인가요? 연구단장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나요?

연구단의 모든 인력이 연구단이 위치하는 장소에서 근무합니다.

2-4 인건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연구단장의 인건비는 선정 절차 완료 후 연구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 하에 결정됩니다.

2-5 전임근무가 원칙인가요?

네. 전임근무가 원칙입니다. 다만, 타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부연구단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고용휴직, 파견 또는 겸직을 통해 원소속기관의 직을 연구단 연구착수 이후 최대 2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원연구단의 경우, IBS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분이 부연구단장으로 임용될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6 타과제 수행이 가능한가요?

부연구단장은 IBS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국제공동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선정된 부연구단장은 기 수행중인 과제를 원장이 정하는 정리기간 동안 마무리해야 합니다.

2-7 이중 소속이 가능한가요?

본원연구단 부연구단장은 IBS가 아닌 다른 기관과 이중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나 IBS와 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캠퍼스와 외부연구단의 부연구단장은 유치기관의 교수 혹은 연구자 신분이 요구조건이므로 2개의 소속을 갖게 됩니다.

3. 구성, 운영관련

3-1 부연구단장의 예산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서상에 제안한 예산을 기본으로 단장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협의된 예산은 IBS 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최종 결정됩니다.

3-2 연구단의 연구결과로 생산된 논문과 지재권은 누가 소유하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본원연구단의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연구결과물의 소유는 IBS에 있습니다. 논문의 경우 저자가 IBS외의 소속을 갖고 있으면 IBS와 병행하여 표기합니다.

캠퍼스와 외부연구단의 경우, IBS:캠퍼스 연구단은 1:1의 비율로, IBS : 외부 연구단의 경우 2:3의 비율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3-3 연구단 성과는 언제 평가를 받게되며 연구단 종료시 어떻게 되나요?

연구단 성과평가는 3년 주기로 시행합니다. 신규 연구단의 경우, 연구단 구성 2년 후에 컨설팅 방식의 중간점검(평가가 아닌 컨설팅 개념)을 실시하고, 이후 3년 주기로 성과평가를 시행합니다. 즉, 5년차, 8년차, 11년차 등의 주기로 성과평가를 시행합니다. 8년차 및 그 이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단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연구단 폐지가 결정되면 본원 부연구단장은 관련 분야의 다른 연구단에 배속될수도 있으며, 캠퍼스와 외부연구단의 부연구단장은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